4. 휴게공간, 놀이공간

■설치원칙 휴게공간과 놀이공간은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안한 구조와 안전성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

■설치요점

- 휴게의자의 설치 위치와 구조는 휠체어가 접근, 회전가능한 주변여건이 되는가를 확인하고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좁은 보도 등에 설치하는 경우 어떻게 휠체어를 접근, 이용하게 하는가에 따라 나머지 통행로 차단여부가 결정되므로 설치방법에 신중을 기해야한다.
- 놀이공간은 보호와 감독이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

- 휴게공간 및 놀이공간은 주거동에서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이 위치하여야 한다.
- 놀이공간과 도로, 주차장, 기타 인접시설물과의 사이에는 폭 2m 이상의 녹지공간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 단지 내 어린이 놀이공간은 건축물의 외벽 각부분으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하는 것이 좋다.

〈놀이공간의 위치〉

2) 놀이공간

- 놀이공간은 장애 아동을 고려하여 통합 및 개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 어른이 아동의 놀이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
- 이용공간 사이의 완충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 CCTV 등의 방범 시설과 추락위험이 있는 곳에 난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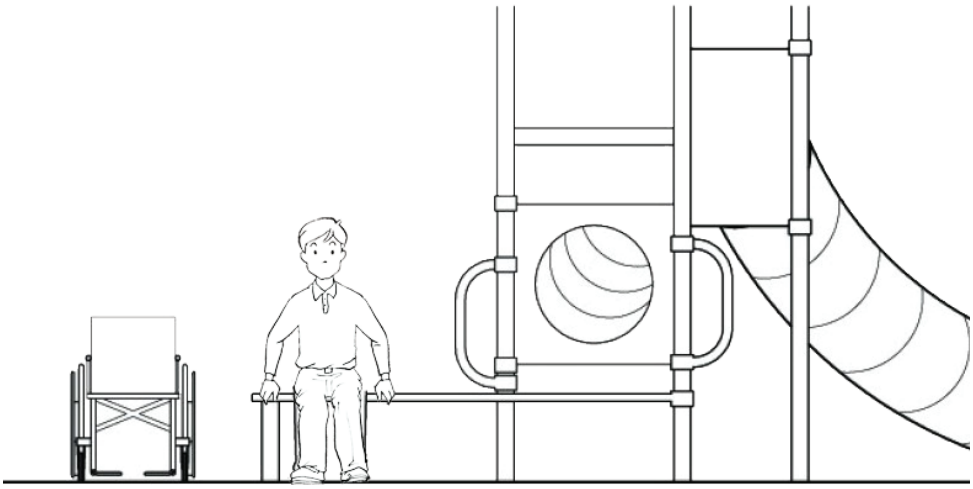

〈다양한 놀이공간의 통합〉

3) 휴게공간

- 휴게공간은 무장애화 된 보행안전공간 외에 설치하여야 하나, 보행공간과 인접하여 배치하고 수평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
- 휴게공간에는 휠체어 사용자와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 가능한 공간을 조성하여야 하며, 등받이와 손잡이가 있는 휴게의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휴게의자의 바닥 높이는 0.4m 정도가 가장 적당하며, 발이 닿는 위치가 평탄하여야 한다.
- 휠체어 사용자와 일반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휴게의자 측면에 1.5m×1.5m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으며, 휴게의자로의 접근 동선 상에 단차가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휴게공간의 설치 위치〉